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59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발의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9. 1. 9일 송아량의원(찬성자9명)이 발의하여 2019. 1.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의안번호:제317호)과 2019. 1. 23일 홍성룡 의원이 발의(찬성자23명)하여 2019. 1.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제331호)을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2019.2.27.)에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두 조례안의 제명이 유사하여 혼란방지를 위해 제명을 병합하고,
- 의안번호 제317호는, 의견수렴의 대상 및 조사주기가 불명확하여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그 시기를 명확히 하고,

- 의안번호 제331호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포함하는 등 기타 조문체계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두 조례안의 제명이 유사하여 혼란방지를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으로 병합함.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 (안 제5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토록 함. (안 제6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함. (안 제7조)

-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서울형 소방병원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함. (안 제8조)
-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함. (안 제9조)
-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용토록 함.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 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
 -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 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